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7. 3 선고 2019가단2926 판결 [임차보증금반환 청구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1. 10. 21 선고 2020나1743 판결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7. 3 선고 2019가단2926 판결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20. 5. 29

판 결선고 2020. 7. 3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

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,피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피고 자녀들 소유의 보령시 C에 있는 D웨딩홀 상가 2층과 3층(이하 '이 사건 상가'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 1억원, 월 차임 800만 원, 기간 5년으로 정하고 임차하였는데(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w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른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,원고는 위 업체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여 주었으므로,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원 중 연체차임 38,000,000원을 공제한 62,000,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E이고,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며,피고는 임대인이 아니고 F이 임대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와 F 사이에 2008. 3. 4.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, 당시 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F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사실, F, G, H이 2008 . 1. 18. 이 사건 부동산 중 1/ 3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,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임대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가임대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지현